

[별표 2] <개정 2007.11.15>

초과부담금 산정기준(제29조제3항관련)

1.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

(금액단위 : 원)

구 분 오염물질	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	배출물질 1천세제곱 미터당 부과금액	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								지역별 부과계수		
			20% 미만	20% 이상 40% 미만	40% 이상 80% 미만	80% 이상 100% 미만	100% 이상 200% 미만	200% 이상 300% 미만	300% 이상 400% 미만	400% 이상	I 지역	II 지역	III 지역
황산화물	500		1	1.3	1.6	1.9	2.5	3.5	4.0	4.5	2	1	1.5
먼지	770		1	1.3	1.6	1.9	2.5	3.5	4.0	4.5	2	1	1.5
암모니아	1,400		1	1.3	1.6	1.9	2.5	3.5	4.0	4.5	2	1	1.5
황화수소	6,000		1	1.3	1.6	1.9	2.5	3.5	4.0	4.5	2	1	1.5
이황화탄소	1,600		1	1.3	1.6	1.9	2.5	3.5	4.0	4.5	2	1	1.5
특정유해물질	불소화합물	2,300	1	1.3	1.6	1.9	2.5	3.5	4.0	4.5	2	1	1.5
	염화수소	7,400	1	1.3	1.6	1.9	2.5	3.5	4.0	4.5	2	1	1.5
	염소	7,400	1	1.3	1.6	1.9	2.5	3.5	4.0	4.5	2	1	1.5
	시아나화수소	7,300	1	1.3	1.6	1.9	2.5	3.5	4.0	4.5	2	1	1.5

2. 폐수배출시설의 경우

(금액단위 : 원)

구 분 오염물질	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	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								지역별부과계수		
		20% 미만	20% 이상 40% 미만	40% 이상 80% 미만	80% 이상 100% 미만	100% 이상 200% 미만	200% 이상 300% 미만	300% 이상 400% 미만	400% 이상	청정 및 가지역	나지역	특례 지역
유기물질	25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부유물질	25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총질소	5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총인	5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크롬및그화합물	75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망간및그화합물	30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아연및그화합물	30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
특 정 유 해 물 질	페놀류	150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시아나화합물	150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구리밋그화합물	50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카드뮴밋그화합물	500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수은밋그화합물	1,250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유기인화합물	150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비소밋그화합물	100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납밋그화합물	150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6가크롬화합물	300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포리크로리네이 티드비페닐	1,250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트리클로로 에틸렌	300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테트라클로로 에틸렌	300,00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
3.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(금액단위 : 원)

구분 오염물질	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	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										지역별부과계수		
		10%미만	10%이상 20%미만	20%이상 30%미만	30%이상 40%미만	40%이상 50%미만	50%이상 60%미만	60%이상 70%미만	70%이상 80%미만	80%이상 90%미만	90%이상	청정 및 가지역	나지역	특례 지역
유기물질	250	1	1.2	1.4	1.6	1.8	2.0	2.2	2.4	2.6	2.8	2	1.5	1
부유물질	250	1	1.2	1.4	1.6	1.8	2.0	2.2	2.4	2.6	2.8	2	1.5	1

4.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(금액단위 : 원)

구 분 오염물질	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	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								지역별부과계수		
		20%미만	20%이상 40%미만	40%이상 80%미만	80%이상 100%미만	100%이상 200%미만	200%이상 300%미만	300%이상 400%미만	400%이상	청정 및 가지역	나지역	특례 지역
유기물질	250	30	40	45	50	55	60	65	70	2	1.5	1
부유물질	250	30	40	45	50	55	60	65	70	2	1.5	1

5.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대상시설의 경우

(금액단위 : 원)

구 분 오염물질	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	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								지역별부과계수		
		20% 미만	20% 이상 40% 미만	40% 이상 80% 미만	80% 이상 100% 미만	100% 이상 200% 미만	200% 이상 300% 미만	300% 이상 400% 미만	400% 이상	청정 및 가지역	나지역	특례 지역
유기물질	25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부유물질	250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
비 고

1. 협의기준초과율(%)=(배출농도-협의기준농도)÷협의기준농도×100
2. I 지역·II 지역 및 III 지역의 구분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4에 따른다.
3.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하며, 그 중 높은 수치의 것을 산정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한다.
4. 청정지역·가지역·나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.